

신구조문대비표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1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38호, 2018.1.18., 일부개정]
<p>제6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)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6조(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특정관리대상지역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지역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의2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)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교육”이라 한다)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,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관리자 전문교육: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의2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) ① - - - - - - - .</p> <p>1. 관리자 전문교육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.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.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부단체장(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의3(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·제출하는 자료)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</p> <p>1.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(이하 “가입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</p> <p>2. 가입대상시설의 명칭, 소재지 및 일반현황</p> <p>3. 가입대상시설의 허가·등록·신고·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</p> <p>4.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개시일(사용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)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</p> <p>5.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[본조신설 2017.2.3]</p>	<p>제19조의3(복구비 등의 반환명령)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(이하 “복구비등”이라 한다)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</p>

<p><신 설></p>	<p>제19조의4(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) ① 영 제81조의 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. 사업계획서 3. 전문인력 보유 현황 4. 시설 보유 현황 5.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8.1.18]</p>
<p><신 설></p>	<p>제19조의5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9조의6(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)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(이하 “재난안전제품”이라 한다)의 적합성 인증(이하 “인증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(이하 “유효기간”이라 한다)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.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.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</p>

	<p>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8.1.18]</p>
<신 설>	<p>제19조의7(재난안전제품 인증서)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.</p>
<신 설>	<p>제19조의8(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·제출하는 자료)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(이하 “가입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2. 가입대상시설의 명칭, 소재지 및 일반현황3. 가입대상시설의 허가·등록·신고·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4.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(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)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.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[본조신설 2017.2.3] [제19조의3에서 이동]